

2014년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분과 교육



사회복지법인 **Caritas** SEOUL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2014년도 서울대학교 사회사목분과 교육 계획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 (2코린5,14)

○ 2014년도 사회사목분과 교육 일정

시 간	일 정	강 사 (소 속)/ 예정사항
- 10:00	접수	
10:00-11:20	강의 1> 기틀릭사회복지에 대한 지식 함양 : 사회사목활동의 당위성과 2014년 본당 사회사 목활동의 방향	정성환 프란치스코 신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회장)
11:20-12:00	강의 2> 사회사목 활동 진보에 대한 인내 : 사회사목국 위원회 활동인내	
12:00-13:00	점심시간	지하식당
13:00-14:40	강의 3> 사회사목분과 직무능력향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해	류미령 이사 (한국빈곤문제연구소)
14:40-15:00	쉬는 시간	
15:00-16:00	강의 4> 본당 사회사목 우수사례 발표 : 본당 사회사목 지원사업 우수사례	창5동성당 신정동성당
16:00-17:00	피견미사 <주일미사로 진행>	유경춘 티모테오 주교 (서울대학교 사회사목담당 주교)

※ 위 일정은 강사 및 법인 사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0 1 4 년
사회사목분과
교 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바로알기

류미령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이사, 강동대학교 교수)



사회복지법인 Caritas SEOUL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국민기초생활제도 바로알기

강사: 류미령(한국빈곤문제연구소 이사, 강동대학교 교수)

(공통기준)

I. 기초생활보장제도란?

1. 빈곤가구의 최저생계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권리적인 제도임,

II. 급여개요

1. 수급자 선정기준

-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근로능력유무 기준을 충족하여야 수급을 받을 수 있음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이하인 가구
- 소득인정액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자활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수급 받을 수 있음

2. 근로능력이 없는 것이 인정되어서 수급 받을 수 있는 사람

- 65세 이상 노인과 20세 미만의 중,고 재학생
- 1·4급까지의 장애인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 임신 중이거나 출산6개월 미만의 여자
- 질병, 부상 장애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나 중한 질병을 앓아 거동을 하지 못하는 가족을 종일 보호해야 하거나 간병하는 가구원
-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근로 할 수 없다고 판정한 자(의학적평가 4단계 진단을 받거나 활동능력 평가에서 일정 점수를 받은 자)
 - 판정유효기간 1년 (1단계:25점,2단계:30점,3단계:35점)
- 미취학자녀를 종일 양육해야 하는 자
-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에 근무 중인 자

3. 가구원의 기준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있고 주거와 생계를 함께하고 있어야 한다.

- 1)30세 이하의 자녀는 따로 살아도 한가구로 본다.
단 30세 이하이지만 별도로 거주하며 소득이 있는 자녀는 부양의무자로 본다.
- 2)군대에 간 아들은 가구원에서 제외된다.
- 3)행방불명이나 가출한자는 가구원에서 제외된다.
- 4)외국에 3개월 이상 체류하고 있는 경우는 가구원에서 제외된다.

(3) 별도가구

별도가구란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살아도 별도로 사는 것으로 보아 부모나 혹은 자식이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경우이다.

- ①결혼한 자녀의 집에 사는 부모(다양한 경우에 따라 수급여부가 달라짐)
 - ②부모 집에 거주하는 자녀로 자녀가구원이 모두 근로무능력자인 경우
 - ③30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이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 ④결혼한 형제자매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 ⑤이모, 고모, 삼촌 집에 거주하는 소년소녀세대의 경우
 - ⑥조부모와 손자가 함께 사는 경우
- 조부모와 손자 모두 소득과 재산이 없는 경우
-조부모가 소득과 재산이 있는 경우
-조부모의 다른 자녀가 부양능력이 있어 손자만 수급자가 되는 경우

4. 수급 시 제출서류

제 출 목 적	제 출 서 류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확인	-군복무확인서, 재소증명서, 출입국사실 증명서 -실종, 가출신고서 등
소득확인	-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 - 매출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진단서·의료비 영수증, 입학금·수업료 납입고지서 등(소득평가액 산정자료) -지출실태조사표 -무료임대확인서
재산확인 (또는 주거실태 파악)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월세계약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거래 금융기관의 통장사본 또는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원
근로능력 판정	- 활동능력평가 (의학적 판단/ 담당공무원의 평가) - 장애인등록증사본 등

5. 급여의 종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60만원), 장제급여(75만원), 자활급여

6. 최저생계비 기준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기타 등의 요인을 고려하고 식구 수에 따라 수급액이 달라짐

아래 표는 식구 수에 따른 기준금액임

(단위: 원)

구분 \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현금급여기준	488,063	831,026	1,075,058	1,319,089	1,563,120	1,807,152

※ 현금지급기준 :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경우 최대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

7. 재산기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1억	6,800만원	3,800만원

8. 기타소득에 대한 적용

① 사적이전소득

가) 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3개월 이상 지속, 1년에 3회 이상)으로 지원받는 금품.

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지원받는 금품은 전액소득으로 산정

다) 부양의무가 없는 자로부터 정기적인 지원금은 수급자가 가구 최저생계비의 20%를 초과하는 금액만 소득으로 산정

라) 부양의무자 또는 타인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임차료 산정

- 부양의무자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수급권자는 매달 임차료를 지원 받고 있는 것과 같으므로 임차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

- 해당지역 유사주택의 임차료 파악 가능한 경우 : 파악된 유사주택의 월임차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동 임차료가 최저주거비를 넘는 경우 최저주거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차료로 산정.

- 임차료 파악이 어려운 경우: 최저생계비 중 임차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안하여 소득으로 산정.

- 부양의무자로부터 받는 부양비

②실제소득에서 공제되는 소득(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 : 장애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아동양육비, 아동보육료,차상위아동양육수당,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금

-소득에서 가구원의 의료비와 교육비는 공제한다

-근로능력자가 일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을 추정한다.

추정소득은 취업 및 근로여부가 불분명하여 소득을 조사할 수 없으나 주거 및 생활 실태로 보아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자에게 추정한다.

* 추정소득부과 제외대상자

-미취학 어린이를 양육하고 있는 자

-질병 부상, 치매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을 보호 하는 자

-대학에 재학 중인 자

-입영전후 3개월의 자

-교도소 출소 자

-구직등록을 하고 구직중인 자

*추정소득 부과 기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15일 이상 부과할 수 있음

-반드시 대상자와 상담을 거쳐 소명 후 부과

③공적이전소득 중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및 참전명예수당(20%)은 소득에서 제외

④압류금지 최저금액(민사집행법)-월120만원

⑤ 소득산정에서 제외되는 급여

수급자가 받는 기초노령연금, 장애연금과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한부모가정의 아동양육비, 소년소녀가정(세대) 지원금, 위탁아동 양육보조금 등은 부가급여로서 소득에서 제외된다.

9.부양의무자 기준

1)부양의무자 범위

-직계1촌간 부양의무가 있다.

2촌(형제, 자매) 은 함께 사는 경우에는 한가구로 보나 따로 살면 부양의무가 없다.

■ 자녀의 나이기준에 따른 부양의무

1)30세 이상 자녀가 따로 사는 경우는 부양의무자로 본다.

2)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멀리 떨어져 살아도 한가구로 본다.

단 거주를 달리하면서 직장에 다니면 30세가 안 되도 부양의무자로 본다. (2009년 개정)

※ 미혼의 형제자매가 따로 사는 경우에는 부양의무가 없으나 같이 살면 한가구로 본다.

2). 부양비 부과율

결혼한 아들	결혼한 딸	미혼자녀(아들.딸 동일,30세 이상)
30%	15%	30%

■ 부양비부과율이 15%인 경우(2013년 신설)

●적용대상 : 부양의무자가 노인이고 수급(권)자가 노인, 장애인, 한부모,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취약계층 가구인 경우

■ 부양능력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로 인정받는 케이스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여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있다고 소명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권)자 가구가 이혼한 한부모 가구로 전 남편(전처)이 수급(권)자인 아동의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장애인시설 등에 입·퇴소하여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등

-다음 사항 중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질병·장애·실질 등으로 생활이 곤란한 이혼한 한 부모가구로 전 남편(전처)으로부터 양육비 지원이 없거나 또는 지원받는 양육비가 최저생계비 이하에 해당되어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

3) 부양능력의 판정기준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부양의무자기준
부양의무자 없음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부양의무자 있음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부양능력 있음(부양불능, 기피 등)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부양능력 있음(부양이행)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하지 않음

- 4) 부양의무자의 생계비 공제액 - 수급자의 최저생계비와 부양의무자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함
- 부양의무자 재산과 소득의 공제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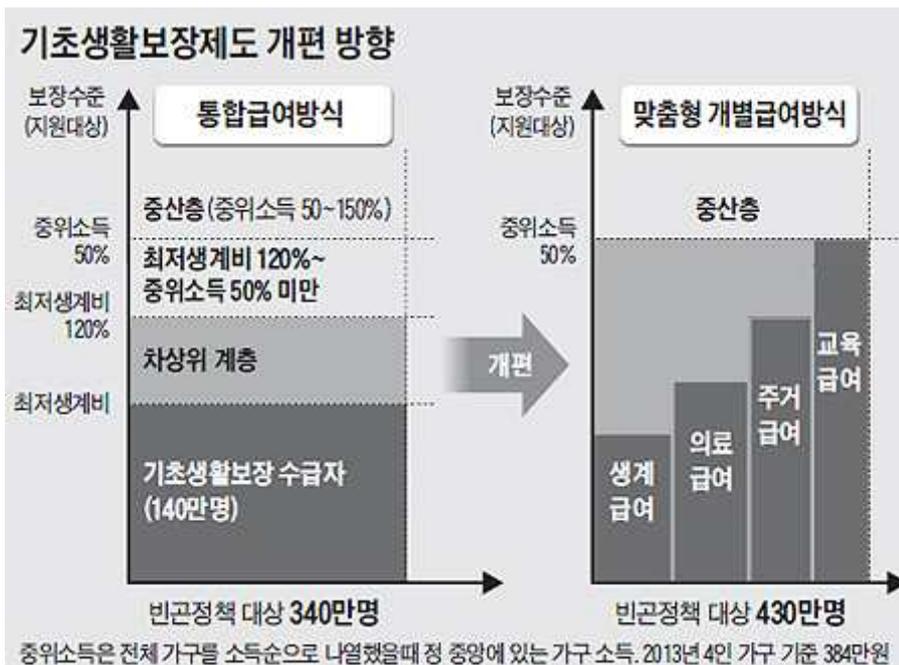
- 부채공제
- 교육비공제
- 의료비 공제
- 워크아웃, 신용회
- 부양의무자의 경우는 부채 종류와 관계없이 전액 공제

5)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비교

분류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수급자	소득환산율	월 4.17%	월6.26%	월100%
부양의무자	소득환산율	재산 종류에 관계없이 월 4.17%		

10.바뀐 제도의 기준(2014년 10월)

1)개편방향



자녀 소득에 따른 생계비 지원 기준 변화



※부모는 홀어머니나 홀아버지로, 자녀는 4인 가구로 가정
 ※자녀가구 소득이 하한선과 상한선 사이에 있을 경우 하한선 초과액의 15(딸)~30%(아들)를 부모 부양비로 간주함

'박근혜표 기초수급자 수당' 이렇게 달라진다



자료:보건복지부

사례)

서울 성북구에 사는 최모(57)씨는 허리가 안 좋아 일을 못한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25만원짜리 방에서 산다. 최씨에게 따로 사는 두 아들(미혼)이 있다. 2월 큰아들의 소득이 155만원인 것으로 드러나 최씨가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했다. 아들의 소득이 부양의무자 기준(월 148만원)을 초과했다. 내년엔 새 기준(199만원)을 적용하면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밑돌면 지금과 같다. 월 소득이 155만(중위소득의 40%)~192만원(중위소득의 50%)이면 임대료(주거비) 바우처(이용권)를 받는다. 지역별로 최저주거 기준을 정해 지원금을 차등화한다. 자녀 교육비도 지원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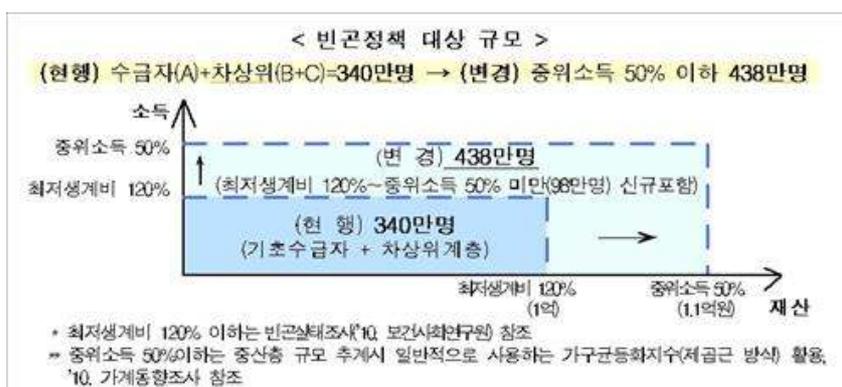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방안 개요〉

	선정기준	급여수준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수준(4인 가구 기준 115만 원)을 고려해 중생보위에서 결정	중생보위(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
주거급여 (국토부)	중위소득 43% 수준(4인 가구 기준 165만 원)을 고려하여 보위에서 결정	-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를 토대로 자기부담분을 공제해 지급 - 자가га구는 유지수선비를 설정해 주택개량 및 현금지원을 병행
교육급여 (교육부)	중위소득 50% 수준(4인 가구 기준 192만 원)을 고려하여 중생보위에서 결정	급여항목은 현행대로 (수업료, 학용품비, 부교재비 등) 유지하되 교육비 지원사업과의 통합범위를 재검토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수준(4인 가구 기준 155만 원)을 고려하여 중생보위에서 결정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인구학적 요인과 질환별 요인 등 의료 필요도 반영 검토

2. 개요

1) 기준: 최저생계비→중위소득기준(30%~50%)

2) 급여실시방법: 꾸러미방식(all or nothing)→맞춤형개별급여



* 중위소득을 빈곤선으로 사용함에 따라 수급자 수와 급여수준이 전반적으로 확대됨

3) 급여종류별 기준

-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이하(올해 4인 가구 기준 115만원) - 피복·교통·식료품비등

-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154만원),

-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0~50%(192만원) 이하,

-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192만원)이하 등을 새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다.

4) 부양의무자 기준 → 완화.

-현재: 부양의무자 가구와 빈곤 대상자의 최저생계비 185%선

-부양의무자가 빈곤 가족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 할 수 있을 때만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

예) 4인 가족이 따로 사는 1명의 빈곤 가족을 두고 있다면, 지금은 소득이 392만원만 넘으면 빈곤 가족의 기초생활수급권이 박탈되지만 바뀐 제도에서는 적어도 441만원(중위소득 384만원+1인 최저생계비 57만원)을 웃돌아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제외된다.

5)기타 수급자선정요건

- "자식 있다고 생계비 지원 탈락" 줄어 듦

- 생계 · 의료비 기준 벗어나도 임대료 · 학비 지원

- 사례1) 70대 노인 A씨의 고정 수입은 국가에서 주는 기초노령연금 약 10만원과 며느리가 다달이 챙겨주는 10여만원이 거의 전부다. A씨는 그러나 법적인 부양의무자인 아들 내외가 월 400만원을 번다는 이유로 정부의 생계비 지원을 못 받고 있다. 아들 역시도 자녀 학비 등을 대기에도 빠듯해 아버지의 병원비와 용돈 외에 더 이상 부담은 힘든 실정이다. -생계비 지원가능

- 돈 벌어도 주거비와 교육비 지원은 계속

생계비 지원을 못 받더라도 주거비, 교육비 지원은 계속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 현행 EITC 지원금은 연간 최대 80만원인데→ 160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한다고 해서 당장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지 않음

***주거급여변경사항**

구분	현행 주거급여	주거급여 개편안
근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거급여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지급 대상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기준선 (중위소득 33%) 이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
	'13년 73만 가구	97.2만 가구 (증 24.2만 가구)
지원 기준	(현금급여기준액-소득인정액)의 19.35% * 현금급여기준액-소득인정액= 생계급여액(80.65%)+주거급여액(19.35%)	지역별 기준임대료 및 유지수선비를 토대로 소득, 가구원수, 주거유형,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
임차	주거급여액 전액 현금 지급	좌동
자가	주거급여액 중 일부만 현금, 일부는 공제하여 주택개량 지원	좌동 (주택개량 비중 확대계획)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	'13년 8만원	약11만원
전달 체계	지자체	좌동 (주택조사는 지자체가 전담기관에 의뢰)

(담당부서:주거복지기획과, 연락처:044-201-4740, 3359)

㉔ 지역별 기준임대료 및 대상가구가 실제 지불하는 임대료를 고려하여 지급

- 실제 지불하는 임대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경우 기준임대료가 아닌 실제 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 공제
* 기준임대료는 최저주거기준

(단위: 만원/월)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1인	17	15	12	10
2인	20	17	14	11
3인	24	21	17	13
4인	28	24	19	15
5인	29	25	20	16
6인 이상	34	29	24	19

- 4급지(1.서울 / 2.경기·인천 / 3.광역시 / 4.그 외), 가구원수별로 구분

- 전월세 실거래가격의 25분위값(최저주거기준 충족 임대료)에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 다만, 1급지의 기준임대료는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산정값의 80%로 조정

Ⅲ 긴급지원제도

긴급지원제도는 최저 생계비의 150퍼센트 이내 소득자 중 위기에 직면한 이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예)

1)개요

갑작스러운 주 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 지원

2)긴급지원대상

①위기 사유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혼으로 인한 소득상실, 단전 1개월 경과 시, 주 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실직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

3)지원종류 및 기간, 지원금액

긴급 지원 종류와 지원 범위 및 기간 안내					
	지원 범위			지원 기간	
생계 지원	1인 399,900원 / 2인 680,900원 3인 880,900원 이후 1인당 20만원 증액			3개월	
의료 지원	300만원 이내			1회	
주거 지원	지역	1~2인	4인 미만	6인 미만	3개월
	대도시	357,600원	594,200원	783,700원	
	중소도시	234,500원	390,700원	514,900원	
	농어촌	134,900원	224,800원	295,900원	
사회복지시설 지원	1인 495,000원 / 2인 844,300원 3인 1,082,400원 이후 1인당 256,900원 증액			3개월	
교육 지원	초등학생 204,700원 / 중학생 325,900원 고등학생 399,300원			1회	
그 밖의 지원	동절기 연료비 88,800원			3회	
	해산비 60만원			1회	
	장제비 75만원			1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 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			횟수 제한 없음	
	상당 등 기타 지원			없음	

4)신청: 본인의 신청 또는 이웃의 신청으로 접수가 가능(129콜센터)

※ 이밖에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름을 달리하는 (예: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경기도),SOS 위기가정 특별 지원(서울),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사업(서울)) 지원제도가 있으니 저소득빈곤가정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접근하면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음

◎ 기초생활수급 상담 시 확인사항

※수급권자 에게 확인해야 하는 사항

- (1)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 (2)가구원 수(동거, 비동거 여부 확인)
- (3)가구원의 총소득 확인
- (4)전월세 보증금 확인
- (5)금융기관부채 및 일반부채(사채포함) 확인
- (6)예,적금 여부 및 적립액 확인, 보험(저축성보험) 확인,예금이자 확인
- (7)교육비 공제를 위한 교육비 확인(고등학생)
- (8)가구원의 의료비 확인
- (9)주위의 도움(공, 사적 소득) 확인
- (10)장애인 확인
- (11)가출신고 확인-신고여부 확인
- (12)자동차 확인
- (13)미취학자녀 및 유치원등교여부 확인
- (14)와병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으로 간병이 필요한 가구원이 있는지 확인
- (15)기존수급자라면 수급액이 적정한지 확인

※부양의무자 확인 사항

- (1)가구원 수 확인
- (2)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의 소득과 재산확인(모든 자녀, 부모)
- (3)임대부동산의 임대료 파악(소득으로 합산)
- (4) 시부모나 장인장모를 부양(모시거나, 생활비 지원) 하는지 확인
- (5)전, 월세 보증금 확인
- (6)금융기관부채 확인
- (7)교육비 공제확인(고등학생, 대학생 여부)
- (8)보육원에 보내는 자녀 확인

(9)채무조정여부 확인(워크아웃, 개인회생)

(11)가구원의 의료비확인

(12)장애인 확인

(13)자동차 확인

2 0 1 4 년
사회사목분과
교 육

본당 사회사목 지원사업 우수사례

창5동성당/신정동성당



사회복지법인 Caritas SEOUL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2014년 본당 사회사목분과장 교육 사회사목활동 사례발표

- 2013년 본당 사회사목 공모지원 사업 수행본당 중심으로 -

창5동 성당

1. 사회사목 활동 상황

주변에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저소득 및 독거 노인, 한부모가정 등이 본당 지역내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도봉구는 재정자립도가 35.9%로 복지예산 및 지원이 넉넉하지 못하여 어려운 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당에서는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과 본당 관할내를 포함하여 가톨릭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생계비, 병원비, 난방비 지원과 도배 및 장판 교체 등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 본당 예산

2011년도 결산액(원)			2012년도 예산액(원)		
구분	수입	지출	구분	수입	지출
본당 지원	21,000,000	21,000,000	본당 지원	18,000,000	18,000,000
사업 수입	3,000,000	3,000,000	사업 수입	4,500,000	4,500,000
후원금	12,000,000	12,000,000	후원금	10,760,000	11,000,000
계	36,000,000	36,000,000	계	33,260,000	33,500,000

3. 사업명

“창5동 주민센터와 연계한 관내 불우이웃 돕기”

4. 사업의 필요성

지역내 동절기 난방비, 생계비, 의료비 지원이 절실한 대상자(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복지 사각지대 차상위 계층) 증가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 지원사업이 필요함.

5. 목적

관내 경제적 어려운 차상위 계층과 독거 노인, 한부모 가정에게 생계비 및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여 보다 나은 삶 속에서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함

6. 목표

- ① 매월 관내 불우이웃 생계비 물품지원 등을 통한 생활안정
- ② 독거노인 집안 청소 및 말 동무하기, 연료비 및 병원비 지원
- ③ 도봉구청, 창5동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한부모가정 영구임대주택 마련 지원 및 이사 지원
- ④ 한부모가정 고충 상담 및 본당과 연계한 심리치료, 학습비 지원

7. 기대효과

- ① 어려운 이웃의 행복한 삶을 살도록 지원
- ②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 대한 나눔실천
- ③ 공공기관과 연대를 통한 사회사목 활성화 기반 마련

신정동 성당

1. 사회사목 활동 상황

다가구 밀집지역이 많아 이 지역에 전월세 사시는 이웃들은 대부분 혼자 거주하는 경향이 매우 높다. 더구나 고령인 독거노인세대가 많이 분포하고 있어 소득이 낮아 정부보조금 외 폐지 수거로 생활하는 세대가 대부분인 실정이다.

따라서 본당 봉사자들은 가정 방문을 통해 분기별 생계비 지원과 말벗을 통한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2. 본당 예산

2011년도 결산액(원)			2012년도 예산액(원)		
구분	수입	지출	구분	수입	지출
본당 지원	3,900,000	3,900,000	본당 지원	3,363,000	3,363,000
사업 수입	4,032,860	4,032,860	사업 수입	3,898,000	3,898,000
후원금	5,507,369	5,262,110	후원금	6,638,295	5,707,420
계	13,440,229	13,194,970	계	13,899,295	12,968,420

3. 사업명

“어려운 이웃과 여행을 통한 시골성당과 결연사업”

4. 사업의 필요성

타교구의 어려운 시골 본당은 서울대교구내 본당 상황보다 재정적 어려움이 클 뿐만아니라 인구밀도도 낮을뿐더러 도시화로 인해 노인인구 비중이 매우 큰 상황이다. 이에 자매결연을 통해 본당 및 교구를 뛰어 넘어 교회내 연대하여 행사를 기획함으로써 사회사목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5. 목적

대상자와 자매 결연을 통해 기쁨을 전달하고, 무관심으로 인한 소외감을 없애며, 나아가 서로 공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6. 목표

① 단체교류 활성화 - 지방특산물 및 기타 교류 가능한 것을 조사하여 지방에서는 특산물 공급을, 서울에서는 판매를 대행함으로써 상호 활성화를 도모한다.

- ② 이용대상자간의 활성화 - 여행과 손님맛이를 통해 새로운 교우와 교류함으로써 대상자간 활성화를 이룬다.

7. 기대효과

- ① 대상자 여행과 시설성당과의 협약식을 통해 대상자 및 봉사자에게 삶에 활력 제공하여 사회사목분과 활성화 도모
- ② 연대성 향상 및 협력 강화
- ③ 친교의 공동체 형성

2 0 1 4 년
사회사목분과
교 육

부록



사회복지법인 Caritas SEOUL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서울카리타스자원봉사센터

설립취지

서울대교구 신자들이 교회 자원봉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자원봉사에 대한 총체적인 정보를 수집, 제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설립하였습니다. 더불어 자원봉사시스템을 통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정보 및 실적관리를 하고 자원봉사 활동의 지속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전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동선을 지역사회에 구현한다.

슬로건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

주요 사업

- 자원봉사자 교육 및 인력양성
 - 자원봉사 기본교육(위탁교육 진행)
 - 청소년 자원봉사 캠프
 - 자원봉사 재교육
 - 자원봉사 강사양성교육
 - 자원봉사 관리자양성프로그램
- 자원봉사통합네트워크시스템 운영, 보급
 - 등록요원 양성교육
 - 등록요원 보수교육
 - 등록요원 운영관리
- 자원봉사 연구조사
- 자원봉사 조직화
 - 행정지원 자원봉사단 운영, 전문 재능나눔 봉사단 운영
- 자원봉사 활성화
 - 자원봉사 홍보사업
 - 가톨릭적 인정감사제도 운영

서울카리타스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통합네트워크시스템

개요

자원봉사통합네트워크시스템은 서울대교구 신자들의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하여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서울카리타스자원봉사센터에서 개발한 전산시스템입니다.

본당 내에서 활동하는 활동 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처에서 활동하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 인증하여 교회 내외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

- 자원봉사자 개인정보, 교육 및 실적정보를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합니다.
-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신자들이 자원봉사가 필요한 다양한 활동처를 지역별, 분야별 검색하여 활동을 연계할 수 있습니다.
-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기관 및 단체들은 시스템을 통해 등록되어진 자원봉사자를 검색하여 다양한 인적자원에 대한 정보습득과 연계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자원봉사활동과 더불어 교회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교회 내외 자원봉사 활동을 기록, 관리하고 인증할 수 있습니다.
 - 교회 내 자원봉사활동 : 성가대, 주일학교, 전례단 등의 활동
장학사업, 도시락 및 밑반찬 전달서비스, 바자회 등의 활동
 - 교회 외적 자원봉사활동 :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동처 활동
- 본당 단체활동 및 단체 운영과 관련한 활동을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과적 운영이 가능합니다.
- 본 시스템을 통하여 자원봉사자 개개인이 자원봉사활동 확인 및 확인서 발급이 온라인상에서 가능합니다.

사용 절차

1단계	등록요원 양성교육 신청 -안내공문 본당 발송 -홈페이지 교육안내게재 (www.esvc.or.kr)	[대상자] ◦ 본당 사무장, 사무원 ◦ 본당 사회사목분과장(주임신부님 확인 필) ◦ 본당 단체장(주임신부님 확인 필)
2단계	등록요원 양성교육 이수	[교육내용] ◦ 자원봉사통합네트워크시스템 소개 ◦ 본당 활용사례 안내 ◦ 자원봉사통합네트워크시스템 사용방법 안내
3단계	등록요원 활동	◦ 본당 소속 자원봉사자 정보 및 실적 관리 ◦ 본당 소속 자원봉사자 활동처 관리 ◦ 자원봉사확인증 발급
4단계	등록요원 활동 유지	◦ 자원봉사 보수교육 참석 ◦ 6개월 이내 실적관리 활동